

임시총회

일시 : 2023년 8월 31일 17:00

장소 : 4호관 6층 (세미나실 1)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협의회

식 순

사회 : 박형진교수

1. 개회사
2. 국민의례
3. 성원보고
4. 회장인사
5. 처리안건
 - 회칙 개정
 - 선거관리위원회 개정
 - 임원선임
6. 폐회사

회칙 개정(안)

제1장 총 칙(總則)

- 제1조(명칭) 본 회는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협의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회는 교권(敎權)의 확립과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하여 학사(學事) 및 학교 행정 전반에 관한 교수들의 의사를 수렴·집약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학교 발전과 교수 권익을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인하공업전문대학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會員)

-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敎員)으로 한다. 단 보직교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7. 3. 28>
- 제5조(활동) 본 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본 회칙과 본 회가 정하는 일련의 활동을 한다.
- 제6조(출회) 본 회의 회원 중 본 회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거나 교수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은 해당 회원에 대한 출회(黜會)조치를 발의할 수 있으며, 재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總會)

- 제7조(총회의 종류)
 1.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장은 다음의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직(在籍) 회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개정 2006. 8. 18>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임시총회의 소집은 제7조 제2항 제①호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총회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관장한다.

- 본 회 회칙의 개정
- 본 회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회장 및 기타 임원의 선출
- 기타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된 주요 사항
- 대학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 총장 후보자의 추천 및 총장의 면직 및 해임권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7. 3. 28>

- 기타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총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된다.(위임장 포함)
- 총회의 의결(議決)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定足數)의 결정에 있어서 위임장에 의한 회원의 참석은 인정하나, 이에 대한 의결권(議決權)은 부여하지 않는다.
- 총회는 회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서면 혹은 참석과 서면 통합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 총회가 의결정족수의 미달로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任員)

제10조(임원)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3인 내외(수석 부회장 포함)<개정 2012. 8. 21>
 - 사무국장 1인
 - 운영위원 약간 명
 - 감사 2인
 -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자문할 자문위원 약간 명

제11조(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회장이 그 직(職)을 사임, 직의 상실, 회원 자격상실, 기타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때에는 본 회칙 제11조 3항에 의거하여 새로 선출하여 잔임(殘任) 기간 동안 해당 직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 부회장, 회장 지명 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 회장의 선출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교수협의회 선거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3. 8. 31>
 -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

회장은 부회장, 운영위원,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자문위원을 추대한다.

제12조(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임무를 대행(代行)한다.
- 수석 부회장은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지명한다.
- 부회장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 회장은 1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임명한다.<개정 2006. 8. 18>

제13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실무를 총괄하여 처리한다.

제14조(감사)

- 감사 선출은 총회에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우편이나 메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과정 및 결과는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개정 2006. 8. 18>
-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때 보고한다.<개정 2006. 8. 18>

제15조(운영위원) 운영위원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본 회의 회무 및 기타 대외 사항을 관장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와 연임)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회계년도 1월 1일~12월 31일)
- 임원의 임기가 완료되었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제17조(청원 심사)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발의한다.

- 본 회의 교수·직원·학생으로부터 청원(請願)된 사항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 청원의 수리(受理) 및 심사여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 청원 심사의 결과는 관련 기관의 장(長)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권고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은 필요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6. 8. 18>

제19조(임원회의) 임원회는 매월 분기별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20조(임시임원회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소운영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기획·총무·홍보 및 출판 활동 담당 별 협의를 위하여 각 운영위원회별 회의를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委員會)

제22조(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감사와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의결권을 가진다.<개정 2006. 8. 18>
-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06. 8. 18>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주요 사항은 총회에 보고한다.
 - 학생 정원 조정과 학과(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대학 행정기구와 부속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본 대학의 평의회 구성 및 각 중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총장, 회장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개정 2017. 3. 28>
 - 총장 후보자 추천과 총장의 면직 및 해임권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7. 3. 28>

- 기타 대학 운영에 주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분과위원회)

- 본 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발전·기획위원회
 - 조직·제도위원회
 - 복지·교권위원회
 - 인사·재정위원회
 - 입학·장학위원회
 - 대외·홍보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에 운영위원 전원은 각각 1개 분과에 소속되어,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은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운영위원에게 일임한다.

제6장 재 정(財政)

- 제24조(재정)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와 월회비 및 기타수익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5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로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 제26조(회계보고)
 - 회장은 총회개최 전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한다.
 - 감사는 결산보고서를 감사하며, 그 보고서를 첨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부 칙

- 제1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확정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제2조(총장 후보자의 선출)<개정 2017. 3. 28>
 - 총장후보자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총장 후보자의 선출은 회장 선출 방식에 따라 최다 득표자 2인을 재단 이사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총장 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총장 면직 및 해임 권고)

- 총장 면직 및 해임권고는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한다.
- 위의 처리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재단 이사장에게 총장 면직이나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
-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총장 면직 및 해임 권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通常)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4.3.1.>

-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의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通常) 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5.5.16.>

- (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8.18.>

- (시행일) 이 회칙은 200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21.>

- (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1.>

- (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8.31.>

- (시행일) 이 회칙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교수협의회 선거에 관한 내규 개정(안)

2023.08.31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교수협의회 규정 제 11조(회장)의 선거 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시기)

회장 선거는 투표 및 개표를 포함하여 현회장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현회장 임기만료연도(이하 선거연도) 8월 31일까지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제 4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1. 회장 및 감사의 선거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연도 8월 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8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4. 위원회 회의는 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5. 위원회는 선거연도 12월 31일에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제 5 조 (위원회의 임무)

1.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회장 후보의 등록과 선거운동 관리,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2. 위원회는 선거연도 9월 30일까지 교수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 일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장의 선출방법)

다음의 절차와 순위에 의해 회장을 선출한다.

1.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와 회장 후보자에 대한 소개서를 준비하여 선거권자에게 공지한다, 회장 투표는 참석, 우편 또는 전자 방식 (단독 혹은 혼합 가능) 으로 진행하며, 투표 결과의 최다득표자를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한다.(단, 동수의 경우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2. 회장 후보 지원자는 위원회에서 공고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회원 20명의 추천을 받아 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 회장 후보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사퇴하여 회장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
 - 회장 후보자가 모두 사퇴하여 후보자가 없는 경우

-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 7 조 (회장선거의 선거운동)

1. 위원회는 회장 후보자에 대한 소개서를 선거권자에게 홍보하고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선거 관련 불공정한 행위가 신고되는 경우 위원회는 즉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반 사항으로 결의되는 경우 후보 자격의 박탈 또는 선거 무효의 결정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 8 조 (선거결과 공고)

1. 위원장은 선거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2. 공고할 선거결과와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선거 일정 공표와 함께 교수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 9 조 (감사의 선출방법)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0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2023. 8. 31)부터 시행한다.